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살펴본 장애인의 인권*

이 보 배**

I. 서론

최근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장애인 성폭력과 같은 어두운 장애인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진정한 귀머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말이다. 억압된 청각장애인 여성의 울부짖음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진정한 양심은 아닐진대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가식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작품은 단지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묵인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대한 일종의 외침이라 볼 수 있다. 신문기사에 몇 줄 등장하고 잊혀지는 단순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거센 외침인 것이다. '도가니' 이후 조금이라도 변화한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힘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이 논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장애인의 인권의 현실과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란 늘 '병신',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적응력을 찾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도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는 해당 시책이나 시설이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판가름된다. 즉

^{*} 투고일자 : 2011. 11. 30 심사일자 : 2011. 12. 10 게재확정일자 : 2011. 12. 16

^{**} 영남대학교 법학과 4학년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통해 '출발선의 평등'(equal footing)을 보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권리인 장애복지조치청구권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여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려면 그 법리적 근거로서 사회법원리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장애인 기본권 이론이 적극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그 파생적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이지만, 장애인 인권의 이념적 기초는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적자치의 원리가 주축을 이루는 근대 시민법원리 하에서 장애인도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와 단절되고 유리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온 것이 주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집단도 아니고,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잠재적 장애인 (예비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인격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특히 장애인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의 핵심은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장애인의 '정상화1)와 사회통합2)'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인권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1985년 915,000명이래 2008년은 2,137,2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89.4%가 각종사고 또는 질병, 재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보호수발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가족이 대부분으로 장애인 보호는 주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핵가족화에 다른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사회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3)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과 같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¹⁾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출판사, 2000, pp.74-80면.

²⁾ 이준우, 장애인복지 실천론, 인간과복지, 2007, 521면,

³⁾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와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가구조사, 장애 판별조사 및 장애인의 장애특성, 경제상태 취업 및 직업재활, 복지욕구 등의 개별조사와 사회 복지시설 거주자의 성별·연령·장애유형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5년마다 이루어지고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08년도에 이루어 졌다.

한다. 특히 인권의 개념과 성격,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장애인의 실태, 장애인인 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핀 후 앞으로 새로운 위험의 증가에 따른 장애인인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인권이란4)

1. 인권의 개념

인권5)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것 즉 천부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불가양적), 인간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생래적)를 말한다. 인권과 기본권을 비교하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이다. 기본권과 인권은 대부분 일치하나 인권은 보편성과 천부성을 갖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 '답게' 살 권리(human rights)를 말한다.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즉 인간이 가져야하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6)

2. 인권의 성격

인권의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눈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⁴⁾ 강석권,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2007, 2면,

⁵⁾ 인권(人權, Human Rights) :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⁶⁾ 유엔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다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서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 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84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10호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 이다.

2)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대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적 의무를 부여받아왔다. 한 국가 내 국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 인간은 그 국가에서 실정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한받고 살아간다. 인권은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인권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인권은 제도적 제한과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 평화,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4)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하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 의존한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인권

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에서도 엿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장애인의 정의와 범위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장애인 대상의 여부 가 달라진다.

1. 장애인의 정의와 법정장애인

국어사전은 장애인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2004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 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한편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대책에 의한 장애 인의 자립·보호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해 법률상에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장애인을 '법정 장애인'이라고 한다. 법정장애인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다음의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

人)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12. 간장애인(肝障碍人)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이 가운데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어 2003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이전에는 장애의 종류가 열 가지였는데 다섯 가지가 추가 된 것이다. 장애범주의 단계적 확대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개정 된 것이다.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다섯 개에서열 개의 유형으로 확대 됐다. 이어 2003년에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이루어져 열다섯개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장애범주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장차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예상 장애범주에는 '만성알콜·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분류는 제2조 제2항에 규정처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2. 국제장애분류의 발전 추세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2005 장애인 실태조사>는 WHO의 권장과 1980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제장애 분류의 변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분류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및 불리(Handicap)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WHO에 의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심신의 구조적ㆍ기능

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disability)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워에서 일상생활

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한다. 그 후 1997년 기존의 ICIDH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ICIDH-2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라할 수 있다. 2001년에는 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체계와 통일된 표준분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영역들은 '신체기능 및 구조' 와 '활동과 참여'라는 두 가지 기본목록에 포함된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 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포함 된다. …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와 비교해 볼 때 아직미흡한 수준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손상상태에서 능력장애 상태로 그리고 지금은 참여(환경)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Ⅳ. 장애인의 실태

2008년 3월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는 213만 7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이며,7) 장애인 고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8)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

⁷⁾ 보건복지부 공식통계이며 장애계에서는 45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구 노령화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고 장애범위가 일시적 장애, 희귀난치병, 치매 등으로 확대되어 감에 다라 이에 따른 장애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로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을 보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인구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구분	한국(2005)	일본(2000)	독일(2003)	미국(2000)	영국(2004)	비고(평균)
출현율(%)	4.59	4.70	10.20	19.30	19.70	11.70

[※] 인용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니 실태조사」

⁸⁾ 장애인 정부부문 고용율은 1997년 3,303명(1.08%)에서 2005년 6,853명(2.25%)으로 증가하였고

입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등 일상생활에 있어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혹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9)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의료, 교육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경제적 실태

2000년도에 재가장애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8.9%를 차지했으며 월평균 소득은 108 만원(도시근로자가구소득 2000년 2/4분기 233만원)으로 일반인 가구의 45.1%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가구 중 13.7%가 기초생활 보호대상가구로 일반인 가구에 비해 5배가 높다.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각종 생활비 지출로 평균 15만 7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교육실태

2004년에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수준을 보면 성인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만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는 헌법 31조에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교육 실태를 보면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0)

3. 경제활동

재가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중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취업자의 비율은 34.2%이며 무직자의 비율이 5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취업중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농업 및 어업근로자가 2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부분 고용율도 1997년 10,331명(0.46%)에서 55,009명(1.49%)으로 계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9) 2004}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차별로 장애인차별이 5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73.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1%가 장애인 차별의 가장 큰 이유로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들고 있는바,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¹⁰⁾ 윤점룡, 장애인의 교육권, 한길사, 2000.

는 단순노무직이 23.4% 서비스 및 판매직 근로자가 21%순으로 이들 직종이 전체 취업 장애인의 3/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1)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의 직위를 보면 자영업이 40.2% 전일제 및 시간제 상용근로자 25.0% 일용근로자 15.8%로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장애인의 차별

장애인의차별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 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거의 장애, 현재의 장애, 장애에 대한 추측이나 장애 를 가질 것을 예상하는 미래의 장애를 이유로 파별을 할 경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장애인 차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 비교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 금지에 머물러 있어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일반적인 차별 영역과 다른 장애인차별의 특 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인권위의 차별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도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두 가지로 이야기 해주고 있다. 첫째,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이다.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이 일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차별의 원인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은 불평등 사회구조를 만들게 된다. 장애문 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¹¹⁾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90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10호

차별에는 장애인이 사회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로, 이것을 직접적 차별이라 하고, 차별 또는 차별의사를 표시 및 암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부추기도록 계산된 모든 공고나 표시를 대중 앞에 전시하거나 등과 같은 간접적 차별이 있다.

장애인 차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장애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별이 있으며 이는 증명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눈을 볼 수 없다는 사실과 학습능력과는 별개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언어상의 대립 또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차별이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뇌성마비로 인해 언어상의 문제가 있거나 자폐 등 발달장애로 인해 일반인들과 다른 언어이해에 대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이다. 이런 문제는 서로간의 언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수화통역 등의 강의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다.

셋째로 태도상의 대립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인한 전생의 업보라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노동력 공급측면의 불리한 처지 등의 개념 이 고착화 되어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 한 존재로 고정관념화 함으로서 태도상의 대립으로 인한 차별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간의 정보 공유와 교육을 통해 친밀도를 높여 감정의 벽을 낮추며, 서로간 의 만남의 활성화를 통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V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의 인권쟁취를 위한 저항이 커져갔고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 운동으로 구현되었다. 20세기말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시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쟁취노력이 교육과 노동에서 참정권, 이동권, 소비자 생활권 등 전 영역으로 확산·전개되어 왔다.12) 그 결과 「장애

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13)

장애인차별금지법은 4년여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법안을 다듬었다. 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장 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라는 장애인운동의 이념과 굴레를 같 이하다고 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1 년 2월 NGO인 <열린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와 서명 운 동 시작했고, 2002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청 원했다. 2002년 1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003년 4 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출범, 2003년 6월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다" 공청회 개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법제정전문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초안 작성. 2005년 4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및 촛불집회,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민주노동당과 법안 수정, 2005년 9 월 20일 노회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2006년 3월 28일부터 장추련 국가 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2006년 8월 중순 청와대 측의 제안으로 정부부처와 장추련이 함께 참여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민관공동기획단」구성 12차례의 회의를 통해2006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통해 발의되었고, 시각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 원 의원 역시 같은 날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노회찬 의원의 발의 법안을 포함한 세 개의 법안이 2007년 2월 제265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일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며, 동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6일 재석 의 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크게, ① 당사자주의, ② 연대주의, ③ 장애 관점의 변화 등으로 요약 할수 있다.14)

¹²⁾ 한국의 장애인 운동의 발자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도현, 차별에 저항하라-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1987~2006), 박종철출판사, 2007.

¹³⁾ 박병식,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방안, 월간 법제, 2007, 67면.

¹⁴⁾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첫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여 쟁취한 성과물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도입해 오고, 장애인들은 그에 대해 의견만 제시하던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벗어 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된 장애인 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요, 당사자 운동의 결실인 것이다.15)

둘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 때문에 몇몇 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처럼 범장애계(247개의 전국/지방 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의 숙원이던 범장애계의 연대를 이루어냈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로 장애 관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문제를 복지와서비스 개념이 아닌「인권법」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장애인 인권문제를 상승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또한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이며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입법의 모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의 각종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기대된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 여부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7. 4. 12, 37면.

¹⁵⁾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불리 우는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권리에 입각한 세계 최초의 장애인법이라는 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만, 무엇보다도 '민중 입법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총칙

2006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차별금지,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등,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등,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장 총칙은 목적(제1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제 2조),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제3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제4조), 차 별판단의 기준(제5조), 차별금지선언(제6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제8조), 인권위법과의 관계(제9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 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장애 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ㆍ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또한.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기간에 걸친'16) 경우만 장애 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 간의 충돌이라 볼 수 있는데, 복지 적 관점에서는 특정된 장애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명 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17) 인권적 관점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중심으로 그때 그러한 차별의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 · 단기간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에 대한보편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18)과 선택권, 그리고 이들을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¹⁶⁾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조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 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⁷⁾ 박종운, 앞의 논문, 11면.

¹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해서는 障害者生活支援ツステム研究會, 障害者福祉改革への提言, かもか. わ出版, 2002, pp.78-83.

294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10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국민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시정기구가 인권위원회로일원화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미비된 점이 있다면「인권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에는 '차별금지'라는 제목 아래 6개절을 두고 있는데, 차별의 영역을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 부성권, 성 등, (6)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내지 제32조).

3.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방안

1) 총칙상 개념정의 규정들의 개정 필요성

(1) 장애 및 장애인 개념규정의 한계

법 제2조 제1항에서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한고 있다.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차별 받는 모든 사람이법의 구제대상이다. 장애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과정적 서술이 필요한지에 대해 비판적 견해19)가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견해는 사회적 모델에 의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해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생겨난 사회적 억압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정신적·신체적 손상에 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손상 그 자체가 책임론의 1차적 진원지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¹⁹⁾ 김진우, 지적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Vol. 35, 2008. 12, 169면.

또한 손상으로 인한 추가적 욕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 억압의 기제가 작동한다고 파악한다. 그 중 차별적 요소를 규제하려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법상의 장애인에 관한 현행규정은 그 책임을 사회가 아니라 장애에게 묻고 있는 형식으로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아니지만 다른 각도에서 장애인규정의 개선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정신적 신체적 기능 손상 또는 기능상실, 장기간, 일상 또는 사회생활, 상당한 제약 등 장애개념의 핵심적 징표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정의 요구가 요구된다고 보면서, 어떠한 현상이 장애로 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하고(적극적 요건), 해당하지 않는지(소극적요건)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또한 장기적,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여부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20)

(2) 간접차별규정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하는 간접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간접차별의 예외를 '정당한 사유'라고만 하고 있어 너무 단순하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RL2000/78/EG 제2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가진 어느 한 사람이특별히 차별을 당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일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절차가 적법한 목적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수단이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또한 요구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한 상이한 처우는 간접차별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이 지침처럼 간접차별의 예외를 '정당한 사유'에서 '예외적으로 만일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절차가 적법한 목적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수단이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또한 요구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한 상이한 처우는 간접차별이 아니다'라고 하여 간접차별의 예외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거부규정과 접근권

²⁰⁾ 이준일,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1, 101면.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 편의제공규정에는 그 규정상의 모호하고 구체적인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제공에 대한 이해,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관계 및 장애인 접근권과의 관계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차별금지법 외에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법률들로는 먼저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21)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 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 제4조에서는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또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관련이 깊은데. 이 법은 장애 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노인, 임 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말하는 편의 증진은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편의와 편의제공은 너무 협소하게 파악된 측면이 있어 편의 내용의 확대 혹은 재정립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동등한 활동과 참여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서비스와 제반 조치를 의미하는 편의는 접근성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접근성이란 도로, 건축물, 교통수단, 정보,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사회 환경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 한다. 따라서 접근권은 장애인이 편의에 접근할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 근권은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표 현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 등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즉 장애인은 기본권을 행사

²¹⁾ 이법의 대상이 되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공동주택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다.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접근권이 담당하는 것이다. 22) 따라서 접근권은 미실현권리의 실현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때 현행법들에서의 편의제공 및 접근권을 시설이용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으로 한정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거부 중 간접차별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간접차별의 내용으로 수용될 수 있어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다.

(4) 괴롭힘 등 금지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20호에서는 괴롭힘 등이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문제점은 첫째, 괴롭힘 및 그와 함께 열거된 개념이 부정확하다는 데에 있다. 둘째, 이러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차별인지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법 제4조 제2항에서는 6개의 차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괴롭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5)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의 개정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대리, 동행"이나 "보호자, 후견인", 또는 "돕기 위한 자"라는 요건 하에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한 차별도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 관련자 범위가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6) 입증책임의 배분규정

법 제47조는 입증책임에 관하여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 차별의 존재를 추측할수 있는 사실을 법원이나 다른 담당하는 장소에서 "믿을 만한 정도"로만 만들면, 피고인은 동등처우원칙의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으로 입증책임에 관한규정을

²²⁾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09, 1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

1) 타인을 시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도록 하는 지시는 본 법 제1항에서 의미하는 차별이라고 함으로서 제3자에게 내리는 차별지시도 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현행차별금지법은 차별지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차별지시도 차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보복의 금지

보복이란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했거나 본인 또는 제3자가 제기한 진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하거나 자료, 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협조,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자인 사용자가 노동자의 진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혹은 동등처우규정의 관철을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노동자를 해고 하거나 또는 기타 차별 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현행차별 금지법은 이러한 진정이나 소송에 대한 보복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진정 및 소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이외에도 ① 거주 장소 및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 시설에서의 특정한 방식으로의 생활에 대한 배제 청구, © 지역공동체에서의 생활과 통합, 지역공동체에서의 배제와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청구, ② 지역공동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립생활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권²³⁾ 혹은 주거권도 차별금지법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장애인 인권 정책의 방향

²³⁾ 자세한 것은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제45호, 2011. 3, 150면.

그동안 장애인은 자신과 그 가족에게 책임이 한정되어 있던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사회 내지는 국가책임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이 보통의 생활을 영위하는 동반자로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 왔지만 좀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애인 인권정책의 이념이 필요하다.

첫째로 장애인은 자립되어야 한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애인의 인권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 즉 잔존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참가이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장애인 인권정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Ⅷ.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장애를 가진 상황자체가 일상적인 참여의 배제와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기도 하고 능력 없음, 무가치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의 원인은 대게 사람들의 편견에서 발생한다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편견에 근거한 차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름과 차이에 대한 긍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도한 법률적 제재조치의 필요성도 나타날 것이다. 단지 처벌에 목적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심각한 경우의 차별에 한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제재조치를 가하고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함께 점차 이러한 장애인차별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시발점일 될 것이다.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아 우리사회의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해결방 안을 제사하자면 첫째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의식을 키우기 위해 의무화된 교 육이 필요하고 비장애인인 일반인에게 장애가 무엇인지 알려 줄 수 있는 정규적인 캠 페인 그리고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에 대한 차별은 비단 장애뿐만 아 니라 우리사회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의 논리가 일반화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근 거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모든 정규교육, 비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의무화 된 인권교육이 필요하겠으며 전반적인 인권교육을 전사회적으로 의무화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방송사들도 인권과 관련한 공익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성 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기존 법들의 보완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그러한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미비하다 할 것이다. 기존 법이 담고 있는 차별 금지조항은 명시적인 성격이 강하며 실제 처벌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 문제는 한, 두해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곳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기존 법들의 보완은 당장의 과제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예산 중 66%이상이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장애인 정책의 현황은 아직도 후진적인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차별을 막고 인권은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구제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을 때 갈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없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공적 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논의들로 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차별의 굴 레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로 뭉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모두 같이 공존하려면 차이와 다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존중해야 한다. 공존을 위한 연대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를 통해 장애의 유무가 개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부 생활시설에서 살거나 집안에 갇혀 사는 장애인들을 주위에서도 볼 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문제는 인권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인권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중의 하나는 장애인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연령, 성별, 시대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의 대상이 되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인권지수가 곧 그 사회의 인권의 척도도 가늠해 볼수 있다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장애인의 인권이 보자오디기 위해서는 특히 국가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인권은 상당부분 사회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정책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일수록 그러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득 내가 처음으로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 갔던 기억이 난다. 장애인을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나는 처음 장애인 시설을 가는 순간 몸이 굳었다. 순간 당황한 것이다. 지금이야 시설을 가도 편안하지만 처음에는 꽤 충격적이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산시켜 서로가 우리사회의 구성원임을 당연하게 인식시키고 서로의 불편함을 없애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즉 자주 만나는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를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최소 수혜자로 전략하게 된다.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 지고 낮았던 계단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론에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극대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라야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이 실현을 통한 장애 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 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1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4.

김도현, 차별에 저항하라-한국의 장애인운동 20년, 박종철출판사, 2007.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09.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제45호, 2011.

김성재,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방안, 현대 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1998.

김창엽, 나는 '나쁜'장애인 이고 싶다, 삼인, 2006.

두오균, 한국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대전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2009.

박병식,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 정비방안, 월간 법제, 2007.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3집, 2011.

신은경ㆍ이익섭, 시민사회 발전과 장애인 인권,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2009.

이수현, 우리 옆의 약자, 산지니, 2006.

이은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소고, 법과 사회, 2010.

이준일,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2008.

이준일,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1.

정인섭. 사회적 차별과 법의지배. 박영사. 2004.

한국인권재단, 21세기 인권(Ⅱ), 한길사, 2000.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 복지 50년사, 양서원, 2006.

〈국문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살펴본 장애인의 인권

이 보 배 영남대학교 법학과 4학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일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해서는 법제개선과 함께 교육 및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과 개선 일 것이다.

<Abstract>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Lee, Bo-Bae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In recent years it seems to be accepted as absolutely right by almos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at person without disabilities and person with disabilities are equal and should be treated so regardless of their race, national origin, sex, religion, disability, etc.

Korea,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crimination in the past for the Disabled Welfare Act as amended and effort, but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on the penalties are still strong and was carrying a specific remedy.

In an effort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disabilities, and the restoration of rights regarding nondiscrimination law enforcement since 2008, but there is still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disability rights is important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awareness. In addition, by ensuring equ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recognized the value of human dign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we will have to live with.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immediately, the first step in the right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s will be implemented and improved.

This article deals with (1)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2)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s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society, and effectively safeguard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discriminated based on disability, thus enabling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to secure equal rights.

Key words: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